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2 년 3 월

• 예규·판례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6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 지 약 6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1 지 2015, 2022.03.14)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19.8.28. 및 2020.3.31. 000 동 000 지상에 공동주택(AAA, 이하 “000 아파트”이라 한다) 및 같은 구 000 동 000 지상에 공동주택을 각각 취득(신축)한 후, 「지방세법」 제 11 조 제 1 항 제 3 호의 세율(1 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AAA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000 원, BBB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000 원을 2019.10.10. 및 2020.4.28. 각각 신고·납부함

- 이후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 27711 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4 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원인행위 당시 이 건 공동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 1447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 조의 2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 2771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 조 제 5 항 제 2 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11.1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8. 이를 거부함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쟁점감면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는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본질상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의 경우 잠재적 상태에 근거한 신뢰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 쟁점감면은 2010.7.6. 「지방세법」 제 286 조 제 6 항으로 신설되었다가 2010.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 조 제 4 항에 규정된 이후 매년마다 1 년씩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6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 지 약 6 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나.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이 신주를 단독으로 배정받은 제 3 자 배정 유상증자로, 쟁점발행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주식은 쟁점유상증자일 전 5 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유상증자 외에 거래된 사실이 없어 시가로 볼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여 쟁점발행가액이 쟁점유상증자 당시의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행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 63 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 2021 서 2955, 2022.03.16)

■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9.1.6. 개업하여 제어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임
- 청구인은 2016.9.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으로 2018.11.13. 쟁점법인이 제 3 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하여 발행한 신주 000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 주당 000 원(액면가액은 000 원이고, 이하 “쟁점발행가액”이라 한다)에 배정받았음
-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000 원(증자전 1 주당 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표 2 과 같이 상증세법 제 39 조 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2020.9.18. 청구인에게 2018.11.13. 증여분 증여세 000 원을 결정· 고지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5.4.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이 신주를 단독으로 배정받은 제 3 자 배정 유상증자로, 쟁점발행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 ✓ 쟁점법인의 주식은 쟁점유상증자일 전 5 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유상증자 외에 거래된 사실이 없어 시가로 볼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점
- ✓ 쟁점법인이 「상법」상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쟁점유상증자를 하였다거나 쟁점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청구인과 합의하에 결정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곧바로 상증세법이 정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 ✓ 쟁점법인은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년 이후 매년 000 배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설립 이후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1 주당 000 원 ~ 000 원 상당의 배당을 실시하였는데(배당을 000%),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8 년말 기준 000 원(1 주당 000 원)에 이르고 있어 쟁점발행가액(1 주당 000 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쟁점발행가액이 쟁점유상증자 당시의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 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 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서면-2021-국제세원-8036, 2022.03.18)

<예규 전문>

■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기관으로 해외에 소재한 국외지점에 대출업무를 하고 있으며, 자금을 대출받은 국외지점은 적정이자비용을 본점에 지급하고 있음
- 국외지점이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그 국외지점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며, 국외지점 소재국가의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해 손금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부하고 있음

(질의요지)

- 외지점이 본점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이 한도 초과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액 산정 시 고려할 국외원천소득의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산정 방법은 기존해석사례(재국조-794, 2018.08.22.)를 참고하기 바람. 다만,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2018.08.22.)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 조 제 15 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 57 조 제 2 항이 적용되지 않은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함.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2.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